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 개정 대비표

(2015. 10. 16)

현 행	변경 후	비고
<p>제 1조. (목적) 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, ~ (이하 생략)</p> <p>제 2조. (용어의 정의)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14. (이하 생략)</p> <p>15. ~ 17. (이하 생략) ② (이하 생략)</p> <p>제 3조. (적용되는 거래) ~ (이하 생략)</p> <p>제11조. (거래의 성립)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. 1. ~ 3. (이하 생략) 4.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. 다만,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. 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① ~ ③. (이하 생략) ④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·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</p>	<p>제 1조. (목적) 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, ~ (좌동)</p> <p>제 2조. (용어의 정의)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14. (좌동) 15. “지연이체”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급인이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지급인이 별도 지정한 시간(이하 “이체지연시간”이라 한다)이 경과한 후에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. 16. ~ 18. (좌동). ② (좌동)</p> <p>제 3조. (적용되는 거래) ~ (좌동)</p> <p>제11조. (거래의 성립)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. 1. ~ 3. (좌동) 4.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, 지연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. 다만,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. 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① ~ ③. (좌동) ④ (삭제)</p>	<p>호 추가 호 체하</p> <p>지연이체 내용 추가</p> <p>조항/내용변경 (제14조, 거래의제한 ⑤항)</p>

연행	변경 후	비고
<p>⑤ ~ ⑦. (이하 생략)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. ⑨. (이하 생략)</p> <p>제13조. 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 ~ (이하 생략)</p> <p>제14조. (거래의 제한) ① ~ ④. (이하 생략)</p> <p>제15조. (지급의 효력발생시기) ① 계좌이체,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. ② ~ ③. (이하 생략)</p> <p>제16조. (거래지시의 철회) ① ~ ②. (이하 생략)</p> <p>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. ④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. ⑤ (이하 생략)</p> <p>제17조. (거래내용의 확인)</p>	<p>⑤ ~ ⑥. (좌동) ⑦. <u>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,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.</u> ⑧. (좌동)</p> <p>제13조. 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 ~ (좌동)</p> <p>제14조. (거래의 제한) ① ~ ④. (좌동) ⑤ <u>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·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</u></p> <p>제15조. (지급의 효력발생시기) ① <u>계좌이체(예약에 의한 계좌이체, 지연이체 포함),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.</u> ② ~ ③. (좌동)</p> <p>제16조. (거래지시의 철회) ① ~ ②. (좌동) ③ <u>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.</u> ④ (좌동)</p> <p>⑤ <u>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.</u> ⑥ (좌동)</p> <p>제17조. (거래내용의 확인)</p>	<p><u>호</u> <u>체상</u> <u>지연이체</u> <u>내용</u> <u>추가</u></p> <p><u>호</u> <u>추가</u> <u>(지연인출금액</u> <u>하향</u> <u>및</u> <u>지연시간</u> <u>변경)</u></p> <p><u>지연이체</u> <u>내용</u> <u>추가</u></p> <p><u>지연이체</u> <u>내용</u> <u>추가</u></p> <p><u>호</u> <u>체하</u></p> <p><u>지연이체</u> <u>내용</u> <u>추가</u></p>

현행	변경 후	비고
<p>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.</p> <p>② ~ ③. (이하 생략)</p> <p>제18조. (오류의 정정) ~ (이하 생략)</p> <p>부칙 (제정) ~ 부칙 (5). (이하 생략)</p>	<p>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,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.</u></p> <p>② ~ ③. (좌동)</p> <p>제18조. (오류의 정정) ~ (좌동)</p> <p>부칙 (제정) ~ 부칙 (5). (좌동)</p> <p><u>부칙 (6)</u> <u>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<u>지연이체 내용 추가</u></p> <p><u>부칙 추가</u></p>